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1~9절 개체교회 교인과 교역자

제1절 개체교회

【103】제2조(개체교회)

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

제2절 교인

【104】제3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원입인 :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 ② 세례아동 :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 ③ 세례인 :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 ④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105】제4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 ② 세례를 받는다.
-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106】제5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 ①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문에서 정한다.
- ② 수요일예배 : 수요일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이다.

- ③ 속회 : 속회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 ④ 기도회 : 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 ⑤ 가정예배 :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 ⑥ 사경회 : 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 ⑦ 부흥회 : 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107】제6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108】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3절 집사

【109】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10】제9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1】제10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제4절 권 사

【112】제11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 ②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113】제12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경」을 공부한 이
-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제13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제12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 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115】제14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제5절 장로

【116】제15조(장로의 정수)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117】제16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 ③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118】제17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한 이
- ②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119】제18조(장로의 안수집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안수 받을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120】제19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121】제20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 내의 교회에 파

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 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에서 이명 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 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또는 지방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122】제21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 ② 연급을 필한 장로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방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담임자가 심사를 요청한 장로는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 ③ 장로가 다른 지방의 교회로 이명 하려면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감리사가 이명 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지방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 ④ 동일 지방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 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감리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장로증서를 받은 후 장정에 준하여 파송한다.
-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123】제22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70세(2월 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24】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6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 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
-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
- 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126】제25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27】제26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128】제27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
- 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

【129】제28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30】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131】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

- ①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 ②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
-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
- ④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 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

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32】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133】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 ②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134】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135】제34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 ③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 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 ⑤ 서리담임자는 지방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리사가 임면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서리담임자가 될 수 없다.
 -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 ⑦ 준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이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136】제35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할 수 없다.
-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137】제36조(담임자의 파송)

-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 ③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138】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139】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행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하지 못한다.
 -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 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9절 부담임자

【140】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